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8 - 59호

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248호(2012.9.13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226호(2013.7.11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, 동작구 고시 제2015-8호(2015.1.29.)로 정비구역(경미한) 변경 지정, 동작구 고시 제2018-37호(2018.5.17.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지정되고, 동작구고시 제2015-14호(2015.3.5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'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'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 5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8월 2일
동 작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종류 및 명칭 : 주택재건축사업 /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42번지 일대
 - 나. 면 적 : 30,107.6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성 명 :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류수현)
 - 나. 주 소 : 동작구 동작대로35아길 14, 상가 201호(사당동, 삼성아파트)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일로부터 72개월
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.03.03.

6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율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 - 가. 대지면적 : 22,735.7㎡ 나. 건 폐 율 : 27.15%
 - 다. 용 적 율 : 223.88% 라. 높이(층수) : 43.2m(지하3/지상15층)
 - 마. 용 도 : 공동주택
 7. 주택의 규모 등 : 아파트 11개동 5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, 연면적 80,825.0168㎡
 8. 변경사유 : 공동주택 사용성 개선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단지배치 변경
 9. 다른 법률의 인·허가 등의 의제
 - 가. 「주택법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 - 나. 「건축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 - 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 사업자의 지정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
 - 라. 기타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에 의거 의제처리되는 사항
 10. 주택재건축사업시행(변경) 인가 관계서류 : 생략
 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참고사항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